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7. 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6.1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6.14.

다. 상정일자 :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2.7.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강 선 속 가정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조항
(안 제5조)

- 여성친화도시 계획의 실시에 관한 조항(안 제6조)
- 2)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의 설정(안 제8조)
 -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 3)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의 실시에 관한 조항도입(안 제10조~제11조)
- 4)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 등에 대한 여성친화관점 도입(안 제12조~제14조)
- 5)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안 제21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
 -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자문·심의
 -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및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자문·심의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양성(남녀)평등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임.

이번 조례의 제정은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물리적 조성방향 및 공공서비스 운영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

0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11년12월말 현재 서울 강남구와 도봉구 등 전국 30개 도시를 지정하였고, 금년도에 10개 도시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정책 컨설팅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여성친화적 어메니티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지원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삶의 질을 보듬는 지역정책,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행복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수단임. 따라서 조성과정은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방식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하에 계획, 실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자체 행정의 유연하고 책임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 조성,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등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서 및 참여자에 의한 동시다발적 사업이 전개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함. 조례제정을 통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여성가족부의 ‘여성참여도시 조성 매뉴얼’에 지자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수 40%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1년6월말 현재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보면 위촉위원 수 753명 중 위촉직 여성위원 수 237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31.4%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한 여성위원회 위촉직 위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위원 수가 편중되어 있거나 균형이 맞지 않아 성 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및 여성참여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임.

0 조례안 제2조제5호에서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이를 조문에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같은 호 각목의 정의규정은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의 조문과 혼선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4조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용어를 정의하였으므로 이를 “여성친화도시”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준용하여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등의”로 하며, 안 제16조제2호 중 “시설의”는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 간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21조 제목 “설치”는 “위원회 설치”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는 조항을 정리하여 이를 “위원회의 역할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수행한다” 로 수정을 요함.

안 제22조제5호 중 “중앙정보협력” 은 “중앙정부 협력” 으로, 안 제2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 없음